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규격 규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작성 자	이름	박광재
	담당부서 (과)	생활공간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범석		연락처	044-205-3545
	과장	전종태		이메일	kwang0705@mail.go.kr

2021. 07. 29.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규격 규정		
	2.규제조문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신설		
	3.위임법령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8.06. ~ 2021.09.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주로 공원, 고속도로휴게소, 역사 등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에 대하여 - 구조, 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기점검 · 수시점검에서 기저귀교환대가 일정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 안전관리를 위한 규격 설정이 필요하며, 이에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0.12.22)됨 ※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저귀교환대 안전실태조사결과 3년 11개월간(2014~2017.11) 총 26건의 위해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위해 사례의 92.3%가 추락인 것으로 조사됨		
	7.규제내용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신설(별표1) 주요내용 - (제1호) 기저귀교환대 종류 : 설치형(주로 벽, 기둥 등에 고정), 비치형 - (제2호) 기저귀교환대 낙상방지를 위한 안전벨트 등 설치 - (제3호, 제4호) 기저귀교환대 설치 높이 및 설치 방법 - (제5호, 제6호) 기저귀교환대의 내부 치수*, 기저귀교환대 안내 표시 - (제7호)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 안전기준 마련 등 - (제8호) 기저귀교환대 본체에 제조자명, 연락처 등 기재 - (제9호) 설치 후 기저귀교환대의 품질 수준 마련(설치 후 파손, 갈라짐 등 확인) - (제10호, 제11호) 기저귀교환대 정기 · 수시점검 및 시험 · 검사 방법 - (제12호, 제13호) 위생시트 등 편의사항 비치, 청결 및 위생상태 확인 등		
	8. 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신규	○ 공중화장실등('20년 기준 총 56,451개소)에 설치된 기저귀교환대는 총 4,853개 이며 규격 적용은 '21.12.23.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 대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하여 낙상사고 등 예방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해당없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 하고 안전하게 기저귀 교환대 이용 및 낙상 사고 등 예방	해당없음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령으로 기저귀교환대 규격을 마련하도록 법령이 개정됨			
			- 기저귀교환대는 시중에서 통상 약 30만원~10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며, 피규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가 물품을 구입 설치하고 있음			
		- 공인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에서 '21년 상반기에 고속도로 휴게소등 기 설치된 기저귀교환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여 위해성 평가를 시험한 결과 유해물질 불검출 등 기준치를 만족함				
		- 따라서, 규격안 마련으로 새로이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기저귀교환대 규격 규정은 '21.12.23.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물품 구매 등에 있어 규격 마련 전·후 비교시 소비자(국가, 지자체, 법인 등) 입장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 정여부	설정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법 제7조의2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 라 함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제1호는 ----- -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2호는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
<신 설>	1.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 : 2015년 1월 1일
<신 설>	2. 제4조의2에 따른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 2022년 1월 1일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주로 공원, 고속도로휴게소, 역사 등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에 대하여

- 구조, 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기점검·수시점검에서 기저귀교환대가 일정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 안전관리를 위한 규격 설정이 필요하며, 이에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0.12.22)됨

※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저귀교환대 안전실태조사결과 3년 11개월 간(2014~2017.11) 총 26건의 위해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위해 사례의 92.3%가 추락인 것으로 조사됨

《기저귀교환대 위해사례 위해증상별 분류》

위해증상	건수	비율
타박상	10	40%
철과상	5	20%
뇌진탕	4	16%
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	2	8%
열상(찢어짐)	2	8%
골절	2	8%
합계	25*	100%

* 기저귀교환대 위해 사례 26건 중 위해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25건 대상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마련
-------	-----	-------------------

	내용	- 행정안전부령으로 기저귀교환대 규격안을 마련하도록 법령이 개정됨. - 기저귀교환대는 시중에서 통상 약 30만원~10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며, 피규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가 물품을 구입 설치하고 있음 - 공인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에서 '21년 상반기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설치된 기저귀교환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제품을 선택하여 위해성 평가를 시험한 결과 유해물질 불검출 등 기준치를 만족함 - 따라서 규격 마련으로 새로이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기저귀교환대 규격 규정은 '21.12.23.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물품 구매 등에 있어 규격 마련 전·후 비교시 소비자(국가, 지자체, 법인 등) 입장에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 하지 않음
규제대안2	대안명	해당없음
	내용	해당없음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마련으로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 이용 및 낙상사고 등 예방	-
규제대안2	해당없음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중앙행정기관	입법예고전에 규격안에 대한 사전 의견 조회를 추진('21.5.21.)하였으며, 의견내용 없음	별도 의견 없음
지방자치단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행정안전부령으로 기저귀교환대 규격안을 마련하도록 법령이 개정('20.12.22.)됨.

3. 규제목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상사고 등 예방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 규격을 마련하여
 -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설점검 시 기저귀 교환대도 함께 점검하도록 하고
 -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영유아 낙상사고 등 예방 및 경감을 위해 기저귀교환대 규격을 마련 하는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교환대 안전벨트, 보호울타리 설치, 구조 재질 및 시설점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연한 분류체계에 해당 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	영유아 낙상사고 등 예방 및 경감을 위해 기저귀교환대 규격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	영유아 낙상사고 등과 관련하여 기저귀교환대 규격을 마련 하는 사항으로 사후평가 관리에 해당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	기저귀교환대 규격을 마련하여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사항으로 규제면제 등에 해당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항목별로 정리하였으며, 국내 사례도 병행 기재

1. 기저귀교환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종 류	비 고
1	설치형	주로 벽, 기둥 등에 리벳, 나사와 같은 고정방식으로 직접 고정하여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진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비치형	벽, 기둥 등에 리벳, 나사와 같은 고정방식으로 직접 고정 하여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진 형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가구 또는 구조물에 부착하는 형태 등이 있다.

⇒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의 종류에 관련된 참고할 국내·외 자료가 없어 국내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기저귀교환대 유형 및 규격(안)을 고려하여 종류를 2종으로 구분하였다.

※ 참고로 유럽 EN 12221은 연령, 몸무게 등에 따라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

※ 유럽 EN 12221-1 3 Terms and definitions 3.1 changing unit elevated structure designed to support a child in a lying position for the purpose of allowing a caregiver to change the child's nappy 3.1.1 type1 changing unit changing unit intended for use children from birth up to an age of 12 months, up to 11kg in accordance with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for use 3.1.2 type2 changing unit changing unit intended for use for children from birth up to an age of 12 months, up to 11kg in accordance with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for use 3.2 wall mounted changing unit changing unit designed to be attached to a wall

2.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는 낙상 방지를 위하여 안전 벨트 또는 보호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가. 안전 벨트의 폭은 최소 20밀리미터 이상으로 벨트 체결 시 영유아를 압박할 수 있는 구조여야하며, 벨트 체결 후 294 뉴턴(N)의 힘을 가

하였을 때 조임구의 파손, 느슨함, 벨트의 절단, 봉사의 절단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보호자가 앉거나 서서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3 방향은 최소 160밀리미터 이상의 내부 높이를 만족하는 보호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 기저귀교환대 안전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2017년)에 따르면 위해 사례의 92.3%가 추락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락 방지를 위해 본 규격(안)에서는 안전 벨트 또는 보호 울타리를 구비하도록 하였다.

가. 안전 벨트는 어린이제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유모차 안전기준을 준용하였다

나. 보호 울타리의 내부 높이는 어린이제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안전기준을 준용하였고, 보호 울타리 기타 요건은 EN 12221을 준용하되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3방향에 보호 울타리가 있도록 하였다.

※ 유모차 안전기준 5.3.3 좌석 벨트 좌석 벨트의 나비는 20 mm 이상으로 고정인 쉽고 유지장치 시험모형(3.16)을 태워 놓고 조절하였을 때 시험모형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압박이라 함은 시험모형과 벨트 사이에 12 mm 손가락 탐침봉이 통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5.4.5.2 좌석 벨트의 중앙부에 294 N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 조임구의 파손, 조임의 느슨함, 벨트의 절단, 봉사의 절단, 리벳의 이탈 등이 없어야 한다.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제1부 : 어린이용 침대가드 4.2.6.3 침대가드의 높이는 설치 후 매트리스 최상단부분에서 최소한 160 mm 이상 높아야 한다. ※ EN 12221-1 5.11 Barriers Barriers shall be provid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changing unit or by means of an additional item, e.g. barrier pad that can be affixed to the changing unit.

3. 기저귀교환대의 설치 높이는 이용자 및 제작 의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보호자가 서서 기저귀를 교환할 의도로 제작된 기저귀교환대의 상단

내부 높이는 650밀리미터 이상 85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단, 세면대 등의 주변 상단면에 비치형 기저귀교환대를 부착 또는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95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보호자가 앉아서 기저귀를 교환할 의도로 제작된 기저귀교환대의 상단 내부 높이는 50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의 상단 내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50밀리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6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 기저귀교환대의 설치 높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13호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제27호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를 일부 준용 하였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기저귀교환대의 설치 높이를 고려하였다.

또한, 이미 설치된 세면대 등의 높이로 인하여 기저귀교환대를 850 mm 이내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950 mm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여 가급적 여러 형태의 기저귀교환대가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무용의자(KS G 4215)에 따르면 의자의 높이는 380 mm ~ 410 mm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 규격(안)에서는 500 mm 이하로 하여 보다 다양하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라. 세면대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KS G 4215 사무용의자 사무용 의자의 앉는 자리 기준점의 높이는 380 mm 이상 410 mm 이하. 다만, 위아래로 조절하는 것은 이 범위를 포함하여 조절하여야 한다.

4. 설치형 기저귀교환대는 나사, 리벳 등을 이용하여 벽이나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비치형 기저귀교환대는 쉽게 이동 할 수 없도록 부착 또는 고정하여야 하며, 부착 또는 고정 부위는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임의의 2방향 이상에 설치형은 294 뉴턴(N), 비치형은 147 뉴턴(N)의 힘을 가하였을 때, 떨어짐, 갈라짐, 밀림이 없어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 기저귀교환대 안전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2017년)에 따르면 기저귀교환대가 불안정하여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비치형태도 부착 또는 고정을 통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착 또는 고정 부위의 하중과 관련하여, 설치형 기저귀교환대 하중을 294N으로 설정한 이유는 대부분 안전 벨트가 있는 형태로 안전 벨트 강도(294 N)에 대한 시험·검사 시 부착 또는 고정 부위의 떨어짐, 갈라짐, 밀림으로 인한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의 요구 조건으로 하였고, 비치형 기저귀교환대 하중은 주로 보호 울타리가 있는 형태로 제품의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보호 울타리 요건,설치 높이 변동 등에 따른 위해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형의 반(1/2)의 힘인 147 N으로 설정하여 성인이 쉽게 이동시킬수 없게 하고, 과도한 부착 또는 고정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 시키고자 하였다.

5. 기저귀교환대의 내부 치수는 길이 방향 650밀리미터 이상, 너비 방향 38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영유아의 이동 간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내부형상이 땅콩 또는 인체 모형인 기저귀교환대의 내부 치수는 길이 방향만 적용한다.

⇒ 기저귀교환대의 치수와 관련하여 유럽표준은 12개월 11 kg 까지의 영유아가 사용하는 유형(유형1)과 15 kg 까지의 영유아가 사용하는 유형(유형2)로 구분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저귀교환대의 대다수는 유형1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어 본 규격(안)에서는 유럽

표준의 유형1의 요구조건을 준용하였다.

기저귀 교환 시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영유아의 위해 요소를 감소시킬 의도로 제작된 땅콩 또는 인체 모형 형태의 기저귀 교환대는 너비 방향의 치수는 규정하지 않았다.

※ 유럽 EN 12221-1 4 General requirements 4.1 Dimensions type 1 changing units at least width: 380 mm, length: 650 mm, and type 2 changing units at least width: 550 mm and length: 750 mm.

6.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 벽 등에는 표1과 같이 안내 표시를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영유아의 안전사고는 제품 및 시설의 부적합한 요인도 있지만, 제품사용 요령을 인지하지 못한 사용자의 부주의도 안전사고의 요인이 될수 있기에 이용자 안내 표시를 부착 또는 게시하게 하였다.

7. 설치 전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표2의 해당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 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저귀교환대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 받도록 하였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59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인 사용 중 어린이에게 닿을 수 없는 제품의 구성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적용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다. 즉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기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하며, 개별 안전기준이 있는 어린이제품은 개별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5.1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2 주소 및 전화번호

5.3 제조년월 제조년월은 “○○○○년 ○○월”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5.4 제조국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규정에 따른다.

5.5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

5.6 크기·체중의 한계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이제품과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5.7 필요시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사용 설명서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5.8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문구를 제품에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구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8. 기저귀교환대 본체에는 다음 표에 제시된 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조년월 : 제조년월은 “○○○○년 ○○월”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게 표시 하여야 한다.

4 제조국 :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규정에 따른다.

5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

6 크기·체중의 한계 :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이제품과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는 어린이제품은 제품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7 필요시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사용 설명서 :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8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라는 문구를 제품에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구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 정보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표시사항을 준용하였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5. 표시사항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꼬리표를 붙이는 방법 등으로 한글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최소한 아래에 열거된 항목을 표시한다. 다만, 개별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에 따른다.

9. 설치 후 기저귀교환대의 품질 수준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품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눕히는 면에 비치형은 50킬로그램의 하중, 설치형은 제8호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 곱하기 2의 하중을 1분 동안 균등하게 가하였을 때, 파손, 이탈 또는 갈라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사용 안전성은 제8호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와 동등한 하중을 균등하게 가하였을 때 하중으로 인한 기울기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5도 이내여야 하고, 하중을 가하는 동안 기저귀교환대가 접히지 않아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 기저귀교환대 안전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2017년)에 따르면 기저귀교환대가 불안정하여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본 규격(안)에서는 보다 안정감 있고 안전한 기저귀교환대를 위한 품질 수준을 정하였다.

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위하여 비치형 기저귀교환대는 유럽 표준에서 제시하는 50 kg을 준용하였고, 설치형 기저귀교환대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대다수의 접이식형태의 기저귀교환대 특성 및 보호자의 가방 무게 등을 고려하여 사용체중의 2배로 설정하였다.

나. 기저귀교환대가 사용 시 영유아의 몸무게로 인하여 기울어짐에 따라 추락 위험 등의 사용자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품질 수준을 별도로 마련 하였다.

※ 유럽 EN 12221-2

5.7 Strength

Position the changing unit in its maximum extended position if possible, ready for use on the appropriate test base. Place a total mass of 50 kg uniformly distributed on the top of the changing area.

10. 법 제12조(시설 점검)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유지·관리 조건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상기에 언급된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 제13. (단, 제3호, 제5호, 제7호는 동일 제품이라고 판단 될 경우 생략 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서 정해진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규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시설 점검)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 본 규격(안)의 내용을 점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규격(안)에 언급된 제3호, 제5호, 제9호는 재설치, 제품 교환, 부속품 교환 등의 행위가 없다면 시설 점검 시 쉽게 변화되지 않는 요건이고, 시험·검사를 위한 사회적 비용 또는 제품 파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나. 사회적 문제 제기 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해진 사항을 포함하기 위함이다.

11.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규격의 시험·검사 방법은 육안 및 표3에 따른다.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규격의 시험·검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12.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장소에는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휴지통, 위생시트 등을 비치할 수 있다.

⇒ 기저귀교환장소에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휴지통, 위생시트 등의

구비 여부는 화장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하였다.

13.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기저귀교환대의 사용상 이상 유무, 청결 및 위생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 기저귀교환대 안전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2017년)에 따르면 기저귀교환대가 더러울 것 같다는 의견이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청결 및 파손 등 이상유무를 화장실 점검표에 표기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1] 기저귀교환대 안내 표시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안내 표시를 부착 또는 게시하게 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크기만 규정하였으며, 안내 표시의 문구 및 형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로 특정화하지 않았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

2. 안내표시기준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마.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작도법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표2] 설치 전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의 적용 항목 및 허용치

⇒ [표2] 본 규격(안)에서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전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의 적용 항목 및 허용치를 제시하였다.

[표3] 시험·검사 방법

- ⇒ 1. 기저귀교환대의 시험·검사 방법에 이용되는 측정 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으로 시험·검사실이 아닌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측정 장비의 수준도 고려하였다.
2. 유모차 안전기준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기저귀교환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용하였다.
3. 유럽표준을 준용하여 본 규격(안)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기저귀교환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3방향에 보호울타리가 구비되도록 강화하였다.
길이 방향의 보호 울타리 높이는 최소한 길이 방향의 75%까지 160 mm 이상이어야 하고, 앉아서 기저귀를 교환할 의도로 제작된 길이 방향이 너비 방향보다 매우 긴 기저귀교환대는 길이 방향의 최소 650 mm 까지 보호 울타리의 높이가 160 mm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 화장실 벽면 등이 영유아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다면 보호 울타리의 한 면으로 간주 될 수 있고, 직물류로 구성된 그물망 형태는 처짐, 유연성 등 예측이 곤란한 여러 불안 요소로 인하여 본 규격(안)의 보호 울타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4. 본 규격(안)에서는 기저귀교환대의 높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설치 현장에서 높이를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상단높이에서 상단내부 깊이를 뺀 값을 기저귀교환대 상단 내부 높이로 정하였다.
5. 유럽 표준의 폭 및 길이 측정 방법을 준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내부 표면에 완만한 반경이 없는 경우는 줄자 등으로 길이 및 너비를 측정하면 되지만 완만한 반경을 가지는 경우는 측정 위치에 따라 기저귀교환대의 치수가 다르게 측정되기에 정확한 치수 측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규격(안)에 제시된 방법에 따르면 된다.
본 규격(안)의 기저귀교환대 내부 치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유럽 표준에서 규정하는 시험 방법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깊이를 측정하고 깊이의 1/3을 기저귀교환대의 내부에 접촉시킬 수 있어 내부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사용 가능하다.
6. 제품 안정성 시험·검사를 하기 위해 유럽 표준에서 언급한 균등하

게 하중을 가하는 방법에 대해 새롭게 기술하였다.

하중이 기저귀교환대의 특정 부위에 더 많이 가해진다면 시험·검사 결과는 상이한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기에 반복·재현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보다 쉽게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 또는 나.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7. 사용 안전성 시험·검사 방법을 새롭게 기술하였다.

하중을 가하였을 때 보다 많이 아래로 기울어지는 제품은 해당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시 보강 또는 보완하여 설치 할 필요가 있다. 하중을 가하기 전·후의 기울기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고, 하중을 가하였을 때 사용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바닥에 수평한 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기울어지는 각도만 고려하였다.

8. [표2] 설치 전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의 적용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방법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시험·검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유모차 안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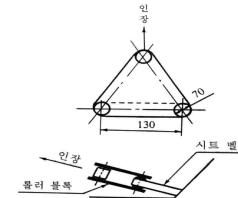
6. 시험 방법

다른 언급이 없으면 시험 장비의 정밀도는 힘은 $\pm 5\%$, 질량은 $\pm 0.5\%$, 각도는 $\pm 0.5^\circ$, 치수는 $\pm 0.5\text{ mm}$, 시간은 $\pm 1\text{ s}$ 이어야 한다. 유모차는 시험 최소 2시간 전에 (23 ± 5) $^\circ\text{C}$ 의 온도 조건에서 전처리 되어야 하고 (23 ± 10) $^\circ\text{C}$ 온도 조건에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공기 주입 타이어가 있는 유모차는 타이어 압력을 제조자의 사용설명서 대로 조정하여 시험한다.

※ 유모차 안전기준

6.4.5 좌석 벨트의 강도

6.4.5.2 그림 31과 같이 물러 블록을 사용하여 좌석 벨트를 임의의 길이로 조정하고 좌석 벨트 표면에 직각 방향으로 물러 블록을 294 N의 힘으로 인장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유럽 EN 12221-1

5.11 Barriers

- a) if w is greater than l and greater than 600 mm then the changing area shall have barriers on three sides of the changing area covering at least 75 % of l (see Figure 3);
- b) if l is greater than w the changing area shall have barriers on two sides of the changing area

covering at least 90% of l (see Figure 3).

Where w is the width of the changing area and l is the length of the changing area.

For wall-mounted units, the wall is to be considered as a barrier for this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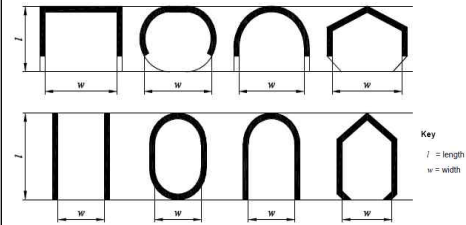


Figure 3 — Examples for arrangements of barriers

※ 유럽 EN 12221-2

5.2 Measurement of changing area

5.2.1 Measurement of width

Position the changing unit on the base according to the type.

Place the test beam (see 4.11) across the width of the changing area (as shown in Figure 7). Place a measurement rod (see 4.12) through the central hole of the test beam (see 4.11) so that it rests on the top of the changing surface.

h is the distance that the measuring rod protrudes below the underside of the test beam. Place two measuring rods, adjusted to extend one third of h below the underside of the test beam, through the relevant holes in the test beam.

If the collars on these two measuring rods rest on the upper surface of the test beam then the width requirement is met.

5.2.2 Measurement of the length

Measure the length of the changing area by the same procedure as specified for the measurement of width in 5.2.1,

※ 유럽 EN 12221-2

5.2 Measurement of changing area

5.2.1 Measurement of width

Position the changing unit on the base according to the type.

Place the test beam (see 4.11) across the width of the changing area (as shown in Figure 7). Place a measurement rod (see 4.12) through the central hole of the test beam (see 4.11) so that it rests on the top of the changing surface.

h is the distance that the measuring rod protrudes below the underside of the test beam. Place two measuring rods, adjusted to extend one third of h below the underside of the test beam, through the relevant holes in the test beam.

If the collars on these two measuring rods rest on the upper surface of the test beam then the width requirement is met.

5.2.2 Measurement of the length

Measure the length of the changing area by the same procedure as specified for the measurement of width in 5.2.1,

except that the relevant holes for the minimum length shall be used. If the height of the barrier is not the same at both ends, the test beam (see 4.11) shall be raised at the lower end until it is parallel to the changing surface.

If the vertical projections of the rods are within the area of the changing units and the collars rest on the upper surface of the test beam then the length requirement is m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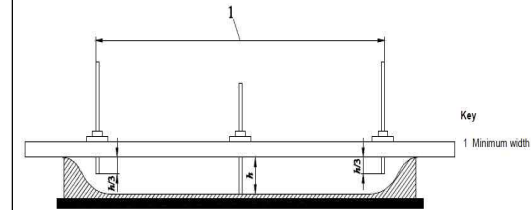


Figure 7 — Method of measurement of the width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4. 시험방법

4.1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의 시험방법

4.1.1 유해원소 용출 KS G ISO 8124-3(완구의 안전성-제3부:특정 원소의 용출)에 따른다.

4.1.2 유해원소 함유량 부록 A에 따라 시험시료를 준비 후 부록 B에 따른다.

4.1.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부록 C에 따른다.

4.1.4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의 'IV.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2-51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시험법)'에 따른다.

4.1.5 폴알데하이드 KS K ISO 14184-1에 따른다.

4.1.6 아릴아민 KS K 0147와 KS K 0739에 따른다.

4.1.7 pH KS K ISO 3071에 따른다.

4.2 물리적 안전요건의 시험방법

4.2.1 작은 부품 시험 부록 D.1에 따른다.

4.2.2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 부록 D.2에 따른다.

4.2.3 날카로운 끝 시험 부록 D.3에 따른다.

4.2.4 자석 지수 부록 D.4에 따른다.

4.2.5 자석 담금 시험 부록 D.5에 따른다.

4.2.6 자석 인장 시험 부록 D.6에 따른다.

4.2.7 낙하 시험 부록 D.7에 따른다.

4.2.8 대형 어린이제품의 전복 시험 부록 D.8에 따른다.

4.2.9 비틀림 시험 부록 D.9에 따른다.

4.2.10 인장 시험 부록 D.10에 따른다.

4.2.11 자석 충격시험 부록 D.11에 따른다.

4.2.12 압축 시험 부록 D.12에 따른다.

o 타법사례

해외사례에 병행 기재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마련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공중화장실내에 설치하는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1.12.23.부터 시행되며,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피규제자수 및 영유아 기저귀교환대 현황 등

- 전국의 공중화장실등은 '20년 기준 총 56,451개소가 있으며 이중 4,853개의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음

- ※ 공인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에서 '21년 상반기에 고속도로 휴게소등에 기설치된 기저귀교환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기 설치된 제품을 선택하여 위해성 평가를 시험한 결과

유해물질 불검출 등 기준치를 만족함.

- ※ 기저귀교환대 규격 규정은 '21.12.23.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물품 구매 등에 있어 규격 마련 전·후 비교시 소비자(국가, 지자체, 법인 등) 입장에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부서 인력을 통해 행정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재정 수요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개정('20년)
-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규격 마련 연구용역 추진('21년 상반기)

2. 향후 평가계획

- 기저귀교환대 규격 관련 담당자 설명회 등 홍보 추진

3. 종합결론

-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항으로 기저귀교환대 규격 규정을 마련은 타당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기저귀교환대 규격을 마련하도록 법령이 개정됨 - 기저귀교환대는 시중에서 통상 약 30만원~10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며,
- 피규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가 물품을 구입 설치하고 있음
- 공인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에서 '21년 상반기에 고속도로 휴게소등 기 설치된 기저귀교환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여 위해성 평가를 시험한 결과 유해물질 불검출 등 기준치를 만족함
- 따라서, 규격안 마련으로 새로이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 기저귀교환대 규격 규정은 '21.12.23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물품 구매 등에 있어 규격 마련 전·후 비교시 소비자(국가, 지자체, 법인 등) 입장에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마련 >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															
편익항목	(낙상) 사고예방 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저귀교환대 안전실태조사결과 3년 11개월간(2014~2017.11) 총 26건의 위해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위해 사례의 92.3%가 추락인 것으로 조사됨 - 기저귀교환대 규격 마련을 통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비용대비 사회적 편익이 클것으로 판단됨															
	【기저귀교환대 위해사례 접수현황】															
	<table><tr><td>연도</td><td>2014년</td><td>2015년</td><td>2016년</td><td>2017년 (1월~11월)</td><td>합계</td></tr><tr><td>건수 (비율)</td><td>6건 (23.1%)</td><td>6건 (23.1%)</td><td>10건 (38.5%)</td><td>4건 (15.4%)</td><td>26건 (100%)</td></tr></table>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월~11월)	합계	건수 (비율)	6건 (23.1%)	6건 (23.1%)	10건 (38.5%)	4건 (15.4%)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월~11월)	합계											
건수 (비율)	6건 (23.1%)	6건 (23.1%)	10건 (38.5%)	4건 (15.4%)	26건 (100%)											

② 정부 :

□ 비용

(정성)세분류	정부															
활동제목	기저귀교환대 설치 · 점검 등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설점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은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 별도의 행정부담이 추가되지 않음															
	【공중화장실 현황(개소)】															
	<table><tr><td>구분</td><td>계</td><td>공공용 시설</td><td>교통 시설</td><td>관광, 체육 시설</td><td>상업 시설</td><td>주유소, 충전소</td><td>기타</td></tr><tr><td>계</td><td>56,451</td><td>22,453</td><td>1,824</td><td>9,190</td><td>4,945</td><td>8,461</td><td>9,578</td></tr></table>	구분	계	공공용 시설	교통 시설	관광, 체육 시설	상업 시설	주유소, 충전소	기타	계	56,451	22,453	1,824	9,190	4,945	8,461
구분	계	공공용 시설	교통 시설	관광, 체육 시설	상업 시설	주유소, 충전소	기타									
계	56,451	22,453	1,824	9,190	4,945	8,461	9,578									